

## 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투자신탁UH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3.04.04

3. 정정사항

- 투자신탁 재무정보 업데이트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**[[간이]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정요구· 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신 설>	- 주식 추가 주1) <u>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 방법</u> 가. <u>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 나. <u>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 주2) <u>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 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신 설>	- <u>증권대차 거래위험</u> : <u>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아니오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- <u>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</u>	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- <u>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u>

		<p><u>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 <p>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<a href="http://pension.fss.or.kr">http://pension.fss.or.kr</a>)의 “과세제도 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- 수령요건 :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</p> <p>- 세액공제</p> <p>[납입금액]</p> <p>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u></p> <p>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u>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	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</p> <p>※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- 수령요건 :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</p> <p>- 세액공제</p> <p>[납입금액]</p> <p>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② &lt;현행 3항과 같음&gt;</p>
--	--	---	---

			<p>[세액공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li> <li>&lt;신 설&gt;</li> <li>- 분리과세한도</li> <li>&lt;신 설&gt;</li> <li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</li> <li>&lt;신 설&gt;</li> </ul>	<p>[세액공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li> <li>※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</li> <li>- 분리과세한도</li> <li>-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16.5% 분리과세 선택가능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</li> <li>-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li> </ul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
1. 재무정보	아니오	정기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-	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(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, 주식의 매매회전율 등 주식 추가)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아니오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끝>.